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021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94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02148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강경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 7.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한다.1)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2)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00,699,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 원단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5. 8.경부터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의류 원자재를 납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합계 659,917,532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회계 담당 직원인 피고에게, 2017. 8. 2.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F 및 C, 2017. 5.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7. 8. 30. 2017. 7.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9. 4. 9.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5.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699,4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단101219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5030)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1. 8. 송달받은 사실조회회신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336)의 사건검색 조회자료가 첨부되었으므로, 늦어도 2019. 1. 8.경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를 상대로 C 소유의 서울 중구 I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H 사이에 2017. 5. 8.자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5030)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위 사건에서 2018. 12. 12. 신용보증기금에 H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19.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336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절차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피고가 공동피고 중 한 명으로 표시된 위 사건의 사건검색 조회자료를 첨부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1. 8. 사실조회회신 도착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 8.경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C의 대표이사 F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C에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가 C에 대여한 3억 2,000만 원은 실제로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14.경 C의 사업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F가 그 무렵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이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해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7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해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15, 16, 18, 20, 21, 25,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갱생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7. 5. 19.부터 2017. 7. 21.까지 C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C의 계좌로 19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C과 사이에 위 각 송금한 금액 상당을 연이율 10%,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고

명의 계좌와 C 사이의 2016. 1. 1.부터 2017. 9. 13.까지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계좌로 합계 72억 원 상당의 금액이 송금되고 C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가 C을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에 돈이 오간 기간, 총 거래금액의 규모, 개별 거래금액, 거래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입출금내역 중 극히 일부인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2017. 5.경 이전까지 C에 190여 회에 걸쳐 송금한 돈들은 피고가 보유한 현금자산과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여 C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이고, 그 후 C의 자금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기존 단기대여금을 모두 정산하면서 이 사건 처분행위의 피담보채권인 장기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6. 2. 24.부터 2016. 2. 29.까지의 거래내역을 일례로 살펴보면, 2016. 2. 24. C으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음날 C으로 1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1,550만 원이 입금되며, 2016. 2. 26. 300만 원, 2016. 2. 29. 2,000만 원이 각 C으로 출금되는데, 이러한 입출금거래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이 모두 대여와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2017. 7. 31.로 기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자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2017.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8. 2. 접수되어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접수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고와 C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임인 측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날짜를 기재함에 따라 2017. 5. 22.로 정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등기원인일자가 당사자에 의해 계약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등기의 접수일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송금액이 C에 이체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는 기존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일 뿐, 이를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한 담보제공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로서 200,699,49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00,699,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유재영, 판사 박지숙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J 대 136㎡

2. 서울특별시 마포구 J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K

목조와즙평가건 본가1동 건평 15평

1) 소장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기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2017.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이유 부분 제3의 나.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은 실제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등기접수일 무렵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장에는 '원고에게'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C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